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수강 신청 안내

2022. 7

학 사 지 원 팀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Ⅰ 교직과정

1. 입학년도(사정년도) 기준

※ 반드시 본인의 입학년도(사정년도) 기준으로 이수

가. 사범대학은 입학년도

나. 비사범계 교직이수자의 입학년도 기준은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선발년도-1 로 함
(예 : 2020 학년도 선발자는 2019 학년도 입학자 기준 적용)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 성적은 평점평균 실점환산표의 중간실점을 적용

가. 2008 학년도 입학자까지(2010 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 ❍ 전공과목 42 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 과목(영역) 이상, 14 학점 이상 포함)
- ❍ 교직과목 20 학점(10 과목 이상) (표시과목 OO 교육론과 OO 교재연구및지도법의 교과목은 전공으로 이수하였어도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으로 인정하며, 교원자격 검정시 전공학점에서 제외됨)
- ❍ 성적 :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 점 이상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만 해당) 평점평균실점 환산표의 중간실점 적용함
-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 2013. 3. 1. 이후 졸업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 회 이상 받아야 함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 회이상 실시(수료자 포함)
  단, 2016. 3. 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남은 학생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학생은 제외함
- ❍ 상기 전공과목 42 학점이상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원자격취득 요건이며 본 대학교 전공 졸업학점은 59 학점이므로 이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실시(단, 2021. 2. 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사람은 제외)
-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 취득 제한

나. 2009~2012 학년도 입학자(2011~2014 학년도 편입자)

- ❍ 전공과목 50 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 과목 8 학점, 기본이수과목 7 과목 (영역) 이상, 21 학점 이상 포함)
- ❍ 교직과목 22 학점 이상(11 과목) - 교직이론 14 학점, 교직소양 4 학점, 교육실습 4 학점
- ❍ 성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 평점평균실점 환산표의 중간실점 적용함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2013.3.1. 이후 졸업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 회 이상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 회이상 실시(수료자 포함)
단, 2016. 3. 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 학기 남은 학생은 1 회 실시하며, 2 학기 미만이 남은 학생은 제외함
❍ 상기 전공과목 50 학점이상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원자격취득 요건이며 본 대학교 전공 졸업학점은 59 학점(2012 학년도 입학자는 63 학점)이므로 이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실시(단, 2021. 2. 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사람은 제외)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 성범죄자,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 취득 제한

다. 2013 학년도 입학자~2015 학년도 입학자(2015 학년도 이후 편입자)

❍ 전공과목 50 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 과목 8 학점, 기본이수과목 7 과목 (영역) 이상, 21 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 학점 이상(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포함 11 과목) - 교직이론 12 학점, 교직소양 6 학점, 교육실습 4 학점
❍ 성적 : 전공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 점 이상, 평점평균실점 환산표의 중간실점 적용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 회 이상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 회이상 실시(수료자 포함)
❍ 상기 전공과목 50 학점이상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원자격취득 요건이며 본 대학교 전공 졸업학점은 63 학점이므로 이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실시(단, 2021. 2. 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사람은 제외)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 성범죄자,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 취득 제한

라. 2016 학년도 입학자부터(2018 학년도 이후 편입자)

❍ 전공과목 50 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 과목 8 학점, 기본이수과목 7 과목 (영역) 이상, 21 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 학점 이상(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포함 11 과목) - 교직이론 12 학점, 교직소양 6 학점, 교육실습 4 학점
❍ 성적 : 전공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 점 이상, 평점평균실점 환산표의 중간실점 적용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 회 이상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 회이상 실시(수료자 포함)
❍ 상기 전공과목 50 학점이상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원자격취득 요건이며 본 대학교 전공 졸업학점은 63 학점이므로 이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2018 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본 대학교 전공 졸업학점은 60 학점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실시(단, 2021. 2. 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사람은 제외)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 취득 제한

마. 2021 학년도 입학자부터(2023 학년도 이후 편입자)

❍ 전공과목 50 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 과목 8 학점, 기본이수과목 7 과목 (영역) 이상, 21 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 학점 이상(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포함 11 과목) - 교직이론 12 학점, 교직소양 6 학점, 교육실습 4 학점

❍ 성적 : 전공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 점 이상, 평점평균실점 환산표의 중간실점 적용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 회 이상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 회이상 실시(수료자 포함)

❍ 상기 전공과목 50 학점이상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원자격취득 요건이며 본 대학교 전공 졸업학점은 60 학점이므로 이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성인지 교육 사범대학은 4회 이상, 비사범계는 2회 이상 실시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 취득 제한

3. 교과교육영역

※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과목

- OO 교육론, OO 교재연구및지도법, OO 논리및논술

가. 사범계 교과교육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기	비 고
국 어	국어교육론	3(3)	1-1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3(3)	3-2	
	국어논리 및 논술	3(3)	2-2	
한 문	한문교육론	3(3)	3-1	
	한문교재연구 및 지도법	3(3)	3-2	
	한문논리 및 논술	2(2)	4-1	
수 학	수학교육론	3(3)	2-2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3(3)	3-1	
	수학교과논리 및 논술	2(2)	4-1	→2015-2학기까지 3(3) →수학논리및논술(2019까지)
음 악	음악교육론	3(3)	3-1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	3(3)	3-2	
	음악논리 및 논술	2(2)	4-2	
체 육	체육교육론	3(3)	3-1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3(3)	3-2	
	체육논리 및 논술	2(2)	3-2	

나. 비사범계 교과교육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기	비 고
일반사회 역 사	사회교육론	3(3)	2-1	경 제
	사회교재연구 및 지도법	3(3)	2-2	행 정
	사회논리 및 논술	2(2)	2-2	역 사 문 화
국 어	국어교육론	3(3)	2-1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3(3)	3-2	국 어 국 문
	국어논리 및 논술	3(3)	2-2	→ 2012-2학기까지 2(2)로 개설
영 어 중 국 어 일 본 어	외국어교육론	3(3)	2-1	영 어 영 문
	외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3(3)	2-2	중 어 중 문
	외국어논리 및 논술	2(2)	2-1	일 어 일 문

- 비사범계 교직 전공과목(교과교육영역)의 격년제 개설 교과목은 개설된 해당학기에 반드시 이수해야 함

4. 기본이수과목

※ 8 과목 24 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가. 각 학과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교육과정편람 참조 및

나.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교직과정 -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에서 확인

다. 기본이수과목은 입학년도(사정년도) 기준으로 각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라. 기본이수과목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 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따라서,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3 학점을 제외하고 전공 50 학점을 이수 해야 함

마. 기본이수과목 중 전공으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전공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행정학과 교직이수자는 반드시 확인)

바. 기본이수과목이 각 분야로 구분된 학과의 교직이수예정자는 구분된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소속 학과에서 자료 확인-국어국문학과, 역사문화학과, 국어교육과)

사. 기본이수과목 중 1 개 과목을 2 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 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1 개의 과목이 2 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 개만 인정한다.(1 개에 해당하는 학점만 인정)

아. 기본이수과목은 각 소속학과 사무실에서 확인

5. 교직 교과목 개설 현황

가. 교직교과목은 사범대학과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외에는 수강할 수 없음

나. 교직과목은 반드시 입학년도(사정년도) 기준으로 이수해야 함 (교과목명 변경 과목은 인정) 입학년도(사정년도) 기준 이외의 과목을 이수할 경우 무시험검정사정기준인 교직 이수학점 (11 과목 22 학점)에서 제외함

다.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과목은 변경전, 변경후 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어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정(교직)에서는 1 과목만 인정할 수 있음

■ 교직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목개설 현황(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영 역	교 과 목 명	학점(시수)	개설학기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2) 2(2) 2(2) 2(2) 2(2) 2(2) 2(2)	1-2 유동적 유동적 2-2 2-1 2-2 4-1	
교과교육	(표시과목) 교육론 (표시과목) 교재연구 및 지도법	2(2) 2(2)	유동적 유동적	
교육실습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2(4주)	4-1	
계	**10과목 20학점**			

- 사범계 학과 분반으로 개설하여 비사범계 수강신청자를 각 분반 인원에 맞게 분배

■ 교직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목개설 현황(2009~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영 역	교 과 목 명	학점(시수)	개설학기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2) 2(2) 2(2) 2(2) 2(2) 2(2) 2(2)	1-2 2-1 2-2 2-2 유동적 2-1 4-1	
교직소양	특수아동의 이해 교직실무	2(2) 2(2)	3-1 3-2	특수교육학개론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2(4주) 2(60시간)	4-1 4-1	
계	**11과목 22학점**			

- 사범계 학과 분반으로 개설하여 비사범계 수강신청자를 각 분반 인원에 맞게 분배

- **특수아동의이해, 특수교육학개론을 모두 이수하여도 졸업사정시에는 1과목만 인정함 (재수강 인정 불가)**

■ 교직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목개설 현황(2013~2016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영 역	교 과 목 명	학점(시수)	개설학기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2) 2(2) 2(2) 2(2) 2(2) 2(2)	1-2 2-1 2-2 2-2 2-1 4-1	
교직소양	특수아동의 이해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2(2) 2(2) 2(2)	3-1 3-2 2-1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2(4주) 2(60시간)	4-1 4-1	
계	11과목 22학점			

- 사범계 학과 분반으로 개설하여 비사범계 수강신청자를 각 분반 인원에 맞게 분배
- 특수아동의이해, 특수교육학개론 /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를 모두 이수하여도 졸업사정시에는 1과목만 인정함(재수강 인정 불가)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 이해를 이수하여도 교직과목으로 인정 불가함

■ 교직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목개설 현황(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영 역	교 과 목 명	학점(시수)	개설학기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2) 2(2) 2(2) 2(2) 2(2) 2(2)	1-2 2-1 2-2 2-2 2-1 4-1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2) 2(2) 2(2)	3-1 3-2 2-1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2(4주) 2(60시간)	4-1 4-1	
계	11과목 22학점			

- 사범계 학과 분반으로 개설하여 비사범계 수강신청자를 각 분반 인원에 맞게 분배
- 2012 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를 이수하여도 교직과목으로 인정 불가

Ⅱ 교직이수자 교육봉사활동 과목 이수 안내

※ 기말고사 전(5 월말, 11 월말)까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학생만 수강신청 하시기 바람. 미제출시 NP 처리됨

1. 교직이수자 교육봉사활동 과목 이수 목적

가. 예비교원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나.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 노인 문예교실 등)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 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는 인정 가능(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 (www.le.or.kr)에서 확인), 단순 자원봉사 등은 불인정

2. 교육봉사활동 이수절차

가.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 승인(승인서류 학생에게 전달, 추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와 제출)
- 사범대학 학생은 소속학과 사무실, 비사범계 교직이수자는 교직과 사무실에서 승인후 실시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기관 증빙 서류 제출, 학기중일 경우 수업시간표 제출)
- 교육봉사활동과목은 교직과목이므로 소속학과 사무실에서는 학점 인정후 교육봉사활동계획서와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원본을 교직과 사무실로 이관하기 바람(교직과 준영구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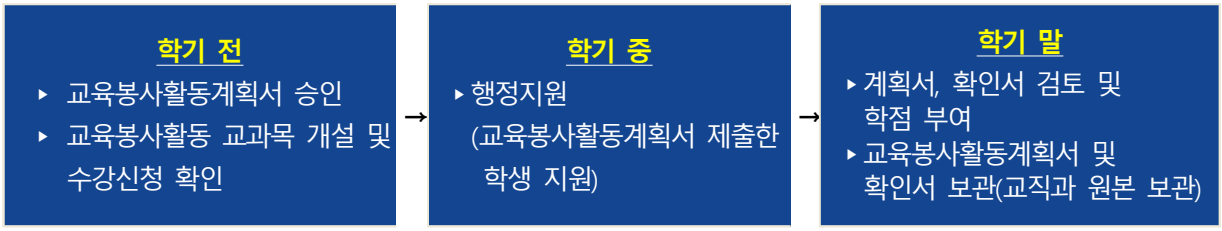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활동가능기관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다. 2 학점(60 시간 이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4 학년 1 학기 및 2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하고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교육봉사활동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로 제출(기 승인받은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수업시간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인가증 또는 허가증과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교육봉사활동 과목 담당교수에게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학생

교육봉사활동 전	→	교육봉사활동 중	→	교육봉사활동 후
① 교육봉사활동 실습희망기관에 신청(계획서) 및 허가 ② 소속 학과 및 교직과에 교육봉사 활동계획서 제출(인정여부 확인)		▸ 교육봉사활동 실시(60시간) < 1일 8시간 이내 > * 점심(저녁)시간 제외 * 학교현장실습기간 인정불가		▸ 수강신청 및 교육봉사 활동계획서 및 교육봉사 활동확인서 제출, 이수 여부 확인

■ 사범대학 교직과 및 소속 학과사무실



라.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시간

1) 30 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1 학점으로 인정함
2) 교육봉사활동은 1 일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점심, 저녁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3)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작성시 점심, 저녁시간은 제외하고 기록 후 확인자 날인을 받아야 함
4) 교육봉사활동 기간과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복시 인정하지 않음

마. 활동가능 기관

1) 「유아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유치원
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어린이집 X)
2) 「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
3)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 31 조 제 2 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6)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
- 지역아동센터의 인정가능 기관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 홈페이지 현황에서 검색되는 센터중 비영리기관을 증빙할 수 있는 기관(고유번호증과 인가증, 허가증 등을 첨부해야 함)
(예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 → 우리동네 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찾기 → 해당 시도 및 시군구를 입력 → 검색)
- 교육내용이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기관(야간학교늘푸른교실 등)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 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은 인정 가능(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단, 청주대학교 동아리인 무궁화야간학교는 인정 불가 - 동아리는 기관이 아님)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

바. 주의사항

1) 활동가능 인정 기관에서 1일 8시간내 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점심, 저녁 시간은 반드시 제외)
2) 학교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각 시행 날짜별로 기록날인 후 확인자 날인과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 한 학기의 기말고사 실시 이전(5월말, 11월말)에 해당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3)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관련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기관 증빙 서류를 교육봉사활동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4) 급여를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
5) 교육봉사활동 기간과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복시 인정하지 않음

Ⅲ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안내

※ 미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이수예정자만 수강 가능함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 학년은 1 학기에, 3 학년은 2 학기에 수강신청하고 이수

1) 교원자격검정령 제 19 조제 3 항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 **2012 학년도 입학자까지** : **적격판정 1 회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함**
  - **2013 학년도 입학자부터** : **적격판정 2 회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함**
- ❍ 해당 학기에 실시 안내에 따라 사범대학, 비사범계 교직이수자 재학생, 수료생은 반드시 검사에 응하여야 함
- ❍ 연 1 회 이수를 기본원칙으로 함
- ❍ 미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 합격기준의 준거점수

구분(항목)	합격(적격)	불합격(부적격)
총점 840점 14개 하위검사요소(준거) 각 60점씩 구성	총점 504점 이상 취득하고 14개 준거별 각 36점 이상을 취득	총점 504점 미만 취득 또는 14개 준거 중 1개준거 36점 미만 취득

- 평가방법: 집합 실시

IV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 미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이수예정자만 수강 가능함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 학년은 1 학기에, 3 학년은 2 학기에 수강신청하고 이수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 19 조제 3 항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기준
- ❍ **2017 학년도 8 월 졸업자부터 2 회 이상 이수(수료자 포함)**
- ❍ 해당학기 실시 안내에 따라 사범대학, 비사범계 교직이수자 재학생, 수료생은 반드시 검사에 응해야 함
- ❍ 연 1 회 이수를 기본원칙으로 함
- ❍ 미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V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 2021. 2. 9「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성인지 교육 이수 의무화 신설

1. 적용대상 및 이수기준

가. 교원양성과정별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대상자 \ 과정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1.02.09. 이전 수료자, 2021년 8월 졸업자(수료자포함), 2022년 2월 졸업자(수료자포함)	면제	면제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2회이상	2회이상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4회이상	2회이상

※ 면제 대상자가 2022년 2월에 미졸업(수료) 시,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수해야만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

나. 졸업까지 남은 교원양성과정 기간별 성인지 교육 필수 이수 횟수만큼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연1회 이수를 기본원칙으로 함

다. 이수 방법

1) 연 1회 이수가 원칙이므로 2022-1학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 이수

※ 2022-1학기 성인지 교육1,2 이수 학생은 수강신청 대상에서 제외

2) 2022-1학기 미이수 학생은 성인지 교육1 또는 성인지 교육2를 수강신청하여 이수

※ 1학년 및 성인지 교육 1 미이수 학생은 성인지 교육1을 수강신청하여 이수

※ 성인지 교육 1을 이수한 학생은 성인지 교육2를 수강신청하여 이수

VI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안내

※ 「초중등교육법」에 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신설, 2021. 6. 23.이후 교원자격검정 신청자부터 적용

1.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 취득 제한

성범죄 경력자 및 마약류 중독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포기해야 함

2. 개인정보이용동의

교원자격검정 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과 함께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 교원자격 취득 신청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

3. 성범죄 경력자 및 마약류 중독자 확인 방법

가. 성범죄 경력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

1) 내용 : 교원자격검정 시 무시험검정신청자에 대해 대학 학사지원팀에서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일괄 공문 조회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교원자격 취득 제한

1) 내용 : 교원자격검정 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과 함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받아 확인

2) 제출 서류

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통보서'

나) 1차 검사(TBPE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3) 서류 유효 기간

가) 교원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나)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예시 : 23년 2월 및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1월 ~ 23년 신청일 이전'까지 발급 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4) 검진방법

- TBPE 검사 :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5)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 시 2차 검사 진행

- 검사 후 결과 나오기까지 3~4일 이상 소요되니 기간 내 제출 할 수 있도록 주의 필요

6) 검사가능 기관

가)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나)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문의 후 진행(보건소는 검사 불가)

7) 검사비용

가) 한국건강관리협회 : 6,000원 (건강검진 병행 시 5,000원, 진단서 요청 시+10,000원)

나) 기타기관 : 약 15,000 ~ 35,000원으로 의료 기관별 상이

다) 2차 검사 : 약 60,000원 이상으로 기관별 상이